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40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서미화 · 이성윤 · 김예지
김종민 · 김선민 · 이수진
이정문 · 용혜인 · 이학영
손 솔 · 정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을 대여·양도·위조·변조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그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증을 재교부할 수 없음. 이러한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는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반드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자격취소 후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 2년은 사회복지사의 위법·부정행위, 직업적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결여 등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에는 다소 짧은 측면이 있어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폭행·감금·유기·강제노동 등 학대행위를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더욱 늘림으로써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행위 등이 발생하는 것을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고,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 밖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 및 재교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2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합격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제11조의2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 10년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제11호 또는 제85조제5호의 죄

2. 제1호 외의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 3년

⑥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제외한다)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또는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자격증 재교부 신청 및 재교부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자격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 소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 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 험의 합격은 제1항에 따라 자 격이 취소되는 경우(제1항제1 호의 사유로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그 효력 을 유지한다.</u>
<u>④</u>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 는 그 취소된 날부터 <u>2년</u> 이내 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 다. <u><신 설></u>	<u>⑤</u> ----- ----- ----- <u>다음 각 호</u> <u>의 구분에 따른 기간</u> ----- ----- <u>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제11조</u> <u>의2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u> <u>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u> <u>10년</u> <u>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u> <u>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u> <u>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u> <u>죄</u> <u>나. 「노인복지법」 제1조의2</u>

<신 설>

<신 설>

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
련범죄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

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 제11호 또는 제85조제5
호의 죄

2. 제1호 외의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 3년

⑥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
된 사람(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제외한
다)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신 설>

장관은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
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
가 소멸한 경우 또는 뇌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
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자격증
을 재교부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자격증 재교
부 신청 및 재교부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